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934
----------	-------

발의연월일 : 2025. 11. 5

발 의 자 : 김성원 · 안철수 · 김선교
김정재 · 이인선 · 박충권
이헌승 · 고동진 · 김용태
박성훈 · 정동만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투자한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연대책임 방지 근거가 없어 회사 대표 등 제3자에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반면, 벤처기업의 경우 시행령을 통해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기업에 대하여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의무를 제3자에게 연대하여 부담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불합리한 연대책임 부담을 해소하고자 함.

다만, 제3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신기술 기반 창업·벤처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한 투자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5조제2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 제목 중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의무를 제3자에게 연대하여 부담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계약의 주요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한 경우
2. 투자계약에서 정한 자금 사용 용도를 위반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 투자계약을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투자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

제58조제3항제3호 중 “제45조를”을 “제45조제1항을”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자 연대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5조(<u>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u> 준 수사항) (생 략)	제45조(<u>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의</u> 준수사항)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② <u>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u> <u>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신기술</u> <u>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의무</u> <u>를 제3자에게 연대하여 부담하</u> <u>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u> <u>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u> <u>우로서 제3자에게 고의 또는</u> <u>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u> <u>러하지 아니한다.</u> 1.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계</u> <u>약의 주요사항에 관하여 허</u> <u>위의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u> <u>한 경우</u> 2. <u>투자계약에서 정한 자금 사</u> <u>용 용도를 위반한 경우</u> 3.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u> <u>계인이 투자계약을 위반하여</u> <u>주식을 처분한 경우</u> 4. <u>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u> <u>는 중대한 투자계약 위반이</u>

	<u>있는 경우</u>
제58조(과징금) ① . ② (생략)	제58조(과징금)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u>제45조</u> 를 위반한 경우	3. ----- <u>제45조제1항을</u>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④ ~ ⑨ (생략)	④ ~ ⑨ (현행과 같음)